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. 11. 15 선고 2024가단1961 판결 [건물명도]

## 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1. 1.

판 결 선 고 2024. 11. 15.

## 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## 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이경민

별지